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2002-115호**도시계획사업(도시철도차량기지)실시계획
변경인가**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74호(1990.11. 7)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강남구고시 제2호(1991. 1.16)로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16호(2001. 1.30)로 인가된 지하철 3호선 수서차량기지내 철도장비 정비고, 초소 및 폐수처리장 신축사업에 대하여, 도시계획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(시설처 건축공사팀 ☎ 520-5683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02년 4월 15일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

- 1) 위치 : 3호선 수서차량기지내 부지
- 2)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173번지외 37필지
[증설사업위치 : 38필지 중 2필지 (164, 173)]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종류 : 도시계획사업[도시철도 차량기지]
- 2) 명칭 : 지하철 3호선 수서차량기지내 철도장비 정비고, 초소 및 폐수처리장 신축사업

다. 사업의 규모

○건축면적

- 계 : 2,577.21㎡

- 정비고 : 1,954.5㎡
- 폐수처리장 : 613.21㎡
- 초소 : 9.5㎡

○연면적

- 계 : 3,319.21㎡
- 정비고 : 2,696.5㎡
- 폐수처리장 : 613.21㎡
- 초소 : 9.5㎡

○층수

- 계 : 지상2층
- 정비고 : 지상2층
- 폐수처리장 : 지상1층
- 초소 : 지상1층

라. 시행자의 주소, 성명

- 1)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47-7번지

- 2) 성명 :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사장 박종옥

마.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 예정일

- 1) 착수일 :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
- 2) 준공예정일 : 당초 2002. 6.30 → 변경 2003.12.31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: 변경 없음**◎서울특별시고시제2002-117호****생태계보전지역지정**

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「서울특별시생태계보전지역」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2년 4월 15일

서울특별시장

가. 위치 및 면적 (1) 송파구 방이동 439~2번지 일대 (55,726m ²) ○ 토지조서					
소 재 지	지 목	면 적(m ²)	소 재 지	지 목	면 적(m ²)
송파구 방이동 439-2	잡종지	1,904	송파구 방이동 443-14	잡종지	261
송파구 방이동 439-3	답	2,450	송파구 방이동 443-15	잡종지	3,190
송파구 방이동 440-5	잡종지	2,069	송파구 방이동 443-16	잡종지	2,354
송파구 방이동 440-6	잡종지	2,400	송파구 방이동 443-17	잡종지	1,656
송파구 방이동 440-7	잡종지	4,334	송파구 방이동 443-18	잡종지	1,762
송파구 방이동 443-7	잡종지	4,298	송파구 방이동 443-23	답	469
송파구 방이동 443-8	잡종지	2,079	송파구 방이동 443-24	전	1,623
송파구 방이동 443-9	잡종지	2,955	송파구 방이동 443-25	전	1,577
송파구 방이동 443-10	잡종지	3,107	송파구 방이동 444-4	잡종지	1,891
송파구 방이동 443-11	잡종지	2,311	송파구 방이동 444-5	잡종지	2,668
송파구 방이동 443-12	잡종지	1,412	송파구 방이동 444-6	잡종지	3,521
송파구 방이동 443-13	잡종지	2,731	송파구 방이동 444-7	잡종지	2,704
(2) 강남구, 송파구 탄천 6.7km [(탄천 2교~대곡교) 1,404,636m ²] 0탄천 직각좌표(TM)					
번 호	X	Y	번 호	X	Y
①	206184	444407	⑥	206506	444540
②	207163	444191	⑦	207394	444277
③	208847	443431	⑧	209083	443520
④	209363	442949	⑨	209547	443023
⑤	210687	440712	⑩	210877	440825

※ 좌표 판독기준

- 투영원점 : 중부원점(동경 127도, 북위 48도)
- 도법 : 직각좌표(TM : Transverse Mercator)
- 독취지형도 : 축적 1/1000, 도엽명:서울나. 지정의 필요성

(1) 송파구 방이동 습지

습지는 육상과 수생생태계가 공존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할 뿐 아니라 대도시 지역에서 연못 형태의 습지는 희소성이 있어 보전 가치가 높으나 형질변경, 경작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높아 생태계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함.

(2) 탄천

탄천은 수생 및 육상생물의 서식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도심의 보기 드문 철새도래지로서 생태적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주민의 과도한 이용 등에 따라 훼손의 우려가 높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함.

다. 생태계보전지역내의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

(1) 행위제한

-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어 시장이 지정한 야생동·식물을 포획, 이식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·덫·울무·그물·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·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
- 하천,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 오는 행위
- 토석채취, 수면매립 또는 불을 놓는 행위

(2) 출입제한

- 방이동 습지 : 원칙적으로 출입제한, 다만 학술조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 출입 허가
- 탄천 : 야생동·식물의 중요 서식(생육) 지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출입제한

라. 위반시 과태료 부과

- (1)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: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(2) 출입제한을 위반한 자 :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마. 관리기관 : 서울특별시

바. 기타

상기지역(송파구 방이동 및 탄천)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·고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녹색서울환경방(<http://env.seoul.go.kr>)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외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서울특별시 환경기획과(☎3707-9517) 또는 녹색서울환경방(<http://env.seoul.go.kr>) 시민의견수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2002-118호

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지형도면작성

건설교통부 고시2002-61호(2002. 4. 8)호로 변경결정 고시된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원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02년 4월 15일

서울특별시장

가.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지형도면 작성, 고시

○변경

- 위치 :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원